

重要犯罪일수록 경찰의 1차적 搜查權 필요

- 「검사의 독점 수사권 인정」은 개혁 취지 벗어나 -

최근 「청와대가 檢·警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현재 검사만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도 수사주체에 포함시키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단일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나는 모임간자 보도와 관련, 「중요범죄 영역 일수록 경찰의 독자적인 1차 수사 이후 검사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철저한 사후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와 국민편

은 검사만이 갖도록 해 '비중요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강 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측이 이번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8월 말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도된 청와대

또한 「범죄를 영역별 또는 죄종 별로 구분하여 수사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한다면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수사과정에서 죄종이 다른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에 수사주체가 달라지는 혼란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중요범죄를 제외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권을 나눠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경찰과의 첨

오고 있는 단계」라면서 「따라서 청와대가 의견을 모으거나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의견 중 하나가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의 검경 수사권 공유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경찰과, 경찰의 자살문제와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가 최근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즉결심판 절차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를 흡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건 처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사개추위」는 수령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이번 달 5일 사개추위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경죄사건 신속처리 절차는 즉결심판 절차 폐지하는 대신 신설한 즉시 심판절차, 서면 재판인 약식 명령제도, 출석 당일 재판은 물론 선고까지 가능한 출석신속 재판 등 크게 3가지로 나눈다」는 것이다.

즉시심판 절차는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때 경찰서장의 소추로 적용되는 기준 즉결심판제도가 소추고도 할 수 있게 했다. 출석 신속재판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매일 법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는 재판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형집행 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사개추위에서 논의중인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경찰관서 상주 및 순회제도를 명문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특히, 즉결심판 절차를 검사기소에 의한 즉시심판 절차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青瓦臺, 모일刊紙 보도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 해명

이를 위해 바람직한 수사체제가 된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요 범죄」에는 내란, 외환, 살인, 미약·조직 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범죄, 법정형 10년 이상의 경제범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요 범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가 검·경 간 수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경찰 의견을 존중토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외에 수사증결권

수사권 조정안은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의 단일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이 범위내에서 행정 검사독점적 수사구조의 폐해가 그대로 유지되어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인 수사과정상의 분권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의 역할 구조상 중요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최초 인지하게 되는데,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하게 하는 것은 중요범죄일수록 요구되는 경찰의 협장 즉응력과 자율수사 의지를 현저히 악화시키게 되어 범죄대응 체제로서의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부탁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들어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례는 전 세 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수사진행 과정상 경찰과 경찰의 역할 단계에 따라 절차적으로 권한 배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모임간지에 보도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상대여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년범 조사時 전문가 참여

경찰청, 한국심리학회와 협약 체결



경찰청이 최근 소년범 인권보호 수사시스템 구축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심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소년범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시스템 구축 사업에 상호 협력·지원하게 되며, 특히 한국심리학회는 '05. 8. 22부터 전국 51개서에서 시행 예정된 「소년

선팅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 40~50%

경찰청, 내년 6월부터 시행 방침

가시광선 투과율 40~50%로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선팅」 단속기준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조만간 입법예고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생긴 마당에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도 검사가 「NO」하면 구속할 수도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뒤틀리고 왜곡된 이 사법제도 때문이며, 국가에서 도둑을 제대로 잡아서 뚜바로 처벌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며, 이것이 사법제도가 주장했다.

경찰청은 당초 선팅 단속기준을 60~70%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가시광선 투과율'로 비꾸고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은 경찰 독점 수사구조 바꾸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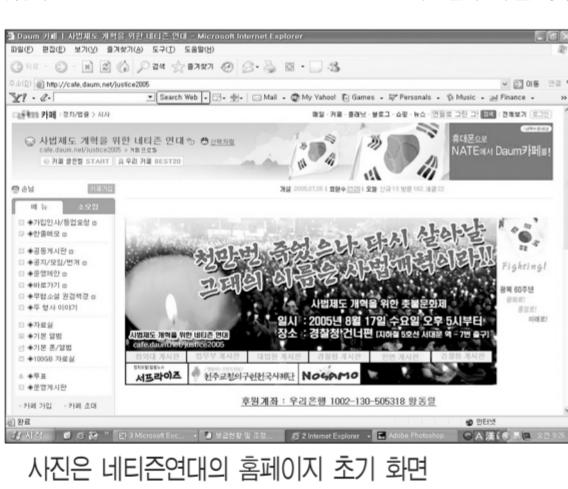
- 네티즌 연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장 -

경찰청에 검찰 X파일 수사 촉구

최근 경찰의 X파일 진상공개와 전·현직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이하 사개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6일 「다음」에 깨풀을 개설한 이래 8월 24일 현재 3462명이 가입한 「사개위」(cafe.daum.net/justice2005)는 경찰의 X파일 진상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검사·판사·변호사 중심의 사법제도에서 경찰·검사·판사·변호사에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법제도로 가는 개혁입법안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형

사소송의 수사·기소·재판·행정집행의 분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참여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에 시민 감사관제를, 경찰 기소에 시민 기소 심사위원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네티즌연대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

한편 「자유마」란 네티즌은 공동개시판을 통해 「검사 비리민을 떠여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지만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비리 연루자를 찾아내어 구속하겠다고 해도 검사가 「NO」하면 구속할 수도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뒤틀리고 왜곡된 이 사법제도 때문이며, 국가에서 도둑을 제대로 잡아서 뚜바로 처벌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며, 이것이 사법제도가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생긴 마당에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들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檢·警 수사권 分權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합시다

지난 5월 17일 제 29차 정기 총회시 檢·警 수사권 분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 취지문과 서명부를 전국 경우회에 보내 드린 바 있고 120만 회원의 이름으로 중앙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서명부에 서명 후 절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절취선 -----

연번	성명	주 소	서 명
1			
2			
3			
4			
5			

司改推委, 즉결심판 폐지 등 최종안 마련

검사의 경찰관서 상주 및 순회제도는 수사구조 문제의 개악일 뿐

- 「즉심」폐지로 사라질 「경찰훈방 근거규정의 명문화」 필요 -

권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비판을 감안, 도입키로 한 것으로 검사가 직접 기소하되 벌금 상한을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형 이하만 선고가 가능한 약식명령제도는 신속처리절차에 포함시켜 현행대로 유지하되 피의자 등의 없이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벌금, 과료와 같은 징역까지 불가능했던 공소 기각, 면소, 항의면제, 무죄선고도 할 수 있게 했다. 출석 신속재판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매일 법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는 재판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형집행 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사개추위에서 논의중인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경찰관서 상주 및 순회제도를 명문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특히, 즉결심판 절차를 검사기소에 의한 즉시심판 절차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마라톤 홍보대사에

황영조·방송인 이다시도 위촉

경찰청이 오는 10월 16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경찰청 인권마라톤 대회」 홍보를 위해 지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국립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과 방송인 이다시도를 「인권마라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이들 두 사람은 대회 포스터 모델로 참여하는 등 대회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인권마라톤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인권 경찰」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 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며, 최근 발표한 남영동 보안 분실의 「인권기념관」 전환 추진 등 경찰에서 인권을 치안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행사이다.

『한국경찰 60년사』편찬을 위한 자료 모집

국립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한국경찰 60년 역사』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지난날 선배님들께서 경찰에 투신하시어 쌓아온 업적과 공로를 바탕으로 소장하고 있는 개인사료, 문서나 사진, 메모록(업무노트), 임명·발령장, 유인물 기타 경찰간행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 등을 모집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역사편찬 사료로 활용한 후 돌려 드릴 것이며, 원하시면 금년 경찰의 날 개관 예정인 경찰박물관에 기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 음 -

● 한국경찰 60년의 기간 설정 :

- 1945. 10. 21 ~ 2005. 10. 20
- 2005. 10. 21 : 제 60주년 경찰의 날
- 2006. 10. 21 : 제 61주년 경찰의 날

● 기본 사양

- 권수 : 1권 5권(본문 3권, 자료집 2권) 기준
2,000권, CD 3,000세트

● 편찬기간 및 주요일정

- 소요기간 : 2005. 5. ~ 2006. 10(1년 6개월)
- 1차 기초자료 수집 : 2005. 4월 ~ 6월

- 편찬완료 : 2006. 10월초

● 자료수집기간 : 2005년 12월 말까지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경찰청 지하1층 112호실(우편번호 120-704)

• 연락처 : 02-362-6089 한국경찰60년사 편찬팀장 이병무(010-6456-7123), 경감 장희동(018-420-5781), 경위 김성철

* 사료를 제공해 주신 선배님들께는 발간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경찰60년사』 1권(5권내외)을 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청 경찰 60년사 편찬팀